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Q**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A**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703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개별 조합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분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일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송으로 청구할 때는 전부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甲 건설회사와 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와 乙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권은 甲 회사와 乙 조합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丙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